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3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3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9. 3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(안 제2조)
-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 등(안 제3조~제4조)
- 아르바이트 수요조사, 신청 및 선발(안 제5조~제7조)
-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(안 제8조~제9조)
-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보상기준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동주민센터, 구의회 등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,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 - 안 제1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대상, 운영시기, 근무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아르바이트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임금,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검토결과,
 - 그 동안 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, 운영시기, 신청 및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여
 - 행정의 공개성, 신뢰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는 한편, 대학생들에게 직업선택 전에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, 본인 전공과 적성, 관심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14일

발 의 자 : 정선희 의원 외 4명

의안 번호	제87호
---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(안 제2조)
- 나.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 등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아르바이트 수요조사, 신청 및 선발 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대학생아르바이트의 보상기준(안 제10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』,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
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』

나. 예산조치 : 2019년 기예산 반영 - 180,784천원

다. 입법예고 (2019. 3. 11. ~ 3. 1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대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"아르바이트"라 한다)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2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운영시기) 구청장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근무방법 등)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동 주민센터, 영등포구의회 등(이하 "기관 등"이라 한다)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(사회복지시설 등)에 대

학생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.
- ④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요조사)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,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.

-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, 업무형태,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.

제6조(신청)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,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상자 선발) ①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 대학생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-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
 2.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
 3. 등록 장애인 본인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4. 취업보호대상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) 및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)
 5.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,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)
 6.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
-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임금기준)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.

제9조(프로그램 운영)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상)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,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』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